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8

2014년 9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3일,
서윤기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다. 상정결과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9월 24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집행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등을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신설).

○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서면 심의·의결은 임시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 태 식)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관련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 안 제4조 및 안 제8조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자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평생교육법」에는 시·도지사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1], 이에 따라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현행 조례상 시행계획 수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평생교육법」에서는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2)]

○ 현행 조례상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시행계획 수립 외에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평생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됨.

---

2)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시행계획의 실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는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실적 및 평가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확인·점검함으로써 다음연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의회차원에서도 평생교육진흥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하겠음.

3) 평생교육협의회의 서면 심의·의결 요건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 안 제13조제5항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서면 심의를 임시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현행 조례의 제13조제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의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서면 심의는 임시회에 한정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시 의결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서면 심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며,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고,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개설 관련 근거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안 제17조~제23조, 안 제24조~제29조, 안 제30조~제33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근거 조항 개정(안 제34조).

○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35조).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8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24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고,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개설 관련 근거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 제1항 제6호 신설).

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등을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4조의2 신설).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서면 심의·의결은 임시회에 한정함(안 제13조 제5항).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안 제17조~제23조, 안 제24조~제29조, 안 제30조~제33조).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근거조항 개정(안 제34조).

사.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을 “설립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을”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의 제목 “(지정운영)”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를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조직 및 시설)”을 “(임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운영경비)”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수익금 운영)”을 “(운영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26조의 제목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의 일반회계”를 “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지도·감독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관계 법령”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4장에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3. ---------- ---------- ---------- ---------- ---------- ------- 설립한------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과 같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시행계획 등의	제4의2(시행계획 등의 제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 및 보고) (개정안과 같음)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6. ---------- -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회의) (개정안과 같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 ---------- ---------- 설립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의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 운영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의 효율성 및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지정운영)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제20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신 설〉		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21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

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진흥원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익금 및 이용료·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료 등)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 운영) 기부금 및 그 밖에 진흥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비용	제25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26조(사업년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제26조(사업연도) ---------- 시----------

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진흥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조건 또는 시장이 정한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신 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28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삭 제〉
제3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

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 ---------- 관계 법령 ---------- ---------- 소속 공무원 ----------.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

〈신 설〉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을 “설립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부의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5항 중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을”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

하기”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의 제목 “(지정운영)”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를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조직 및 시설)”을 “(임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운영경비)”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수익금 운영)”을 “(운영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26조의 제목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의 일반회계”를 “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지도ㆍ감독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관계 법령"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4장에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3. ---------- 설립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

	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 설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의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 운영의 효율성 및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지정운영)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신 설〉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

	다.
〈신 설〉	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제21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진흥원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익금 및 이용료·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조 및 별표 2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료 등)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 운영) 기부금 및 그 밖에 진흥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비용	제25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26조(사업년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연도) ---------- 시----------.
제27조(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

을 해지하거나 진흥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조건 또는 시장이 정한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28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제2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삭 제〉
제3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

		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관계법령 ----------소속 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34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